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속한 사회변화, 기술혁신 및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공지식 뿐 아니라 직무 관련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생들에게 소단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관심에 따라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필요 부분만 선별하여 수강하는 등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높이고, 세부 전공 분야 이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소단위 학위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국내 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교육과정과 연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간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의 한시적 확대를 연장하고자 함

지방대학 특성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을 개선하여 정원 내 일반편입학 여석 배분 시, 총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하여 배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편입학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서 지방대학을 적용하지 않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안 제19조의2 제1항 신설)

- 1)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은 학칙, 학사운영규정 및 지침 등 자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 2)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대학생의 학습권 선택 보장 및 세부 전공 분야의 이수부담 감소를 위해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

나. 소단위 학위과정의 성인학습자 활용 가능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제2항 신설)

- 1) 시간제등록 학생 등 성인학습자는 해당 학교 수업을 등록·이수할 수 있으나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근거는 부재하여,
- 2) 대학이 정규학위과정의 학생 뿐 아니라 성인학습자에게도 양질의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하여 직업교육 및 재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

다.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류 발급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제3항 신설)

- 1)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류 발급 여부·발급 형태 등은 대학마다 상이한 상황으로,
- 2) 대학의 장은 학생의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 형태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

라. 소단위 학위과정과 관련한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연계 과정 운영 및 과정 명칭 관련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제4항 신설)

-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 인정이 가능한 바,
- 2)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연계한 과정 운영 수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마.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 간 연계과정 운영을 대학 내 또는 국내 다른 대학

간 학부와 대학원 간 연계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20조 개정)

바.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100분의 30까지 학사 편입학 할 수 있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학년도까지 5년간 연장(별표1 제2호)

사. 편입학 여식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편입학을 허가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4 제2호파목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소단위 학위과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9조제1항에 의한 전공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경우, 대학의 학생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세부 전공 분야를 최소의 이수 부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단위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 등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성인학습자가 제1항에 따른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 형태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해당 학교·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제20조 중 “학사학위과정과”를 “해당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 간 학사학위과정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단서 중 “2023학년도”를 “2028학년도”로 한다.

별표 4 제2호파목1) 위반행위란 1)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입학·편입학(편입학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2) 위반행위란 2) 중 “입학”을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9조의2(소단위 학위과정)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세부 전공 분야를 최소의 이수 부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단위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 등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성인학습자가 제1항에 따른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 형태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해당호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2. 제29조제2항 제3호	(생략)	(생략)다만,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간호학과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2019

④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해당 학교·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 간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해당호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2. 제29조제2항 제3호	(생략)	(생략)----- ----- ----- ----- ----- -----2028 학년도 -----

		학년도 편입학전형 부터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까지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	---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파. 입학·편입학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허가한 경우 2) 제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을	(생략)	(생략)

		-----.
--	--	--------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파. 입학·편입학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입학·편입학(편입학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허가한 경우	(생략)	(생략)

초과하여 입학 허가한 경우		
2) 제29조제2항 후 단을 위반하여 정 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을 초과하여 입학(편 입학을 포함한 다.)을 허가한 경 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연 락 처	044-203-6288, 6254